



주요 돼지질병 예방을 위한 방역대책 추진

1. 머리말

국 내의 양돈산업은 사육규모가 점차 대형화 추세이고 기업형 전업농으로 전환되는 등 선진국형으로 변모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농가에서는 열악한 사육환경과 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활동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와 같이 차단방역을 소홀히 한 결과 '00년, '02년에는 구제역이 발생하였고,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돼지콜레라가 발생하여 '01년 12월 청정화 달성 이후 금지되었던 예방접종을 다시 전국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또한,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 돼지설사병(PED) 등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질병이 상재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농가 뿐만 아니라 양돈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 최근, 구제역 등 가축질병으로 인한 피해는 자국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를 야기시키므로 수의학분야의 국제기구인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질병 발생을 사전예방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예찰활동 및 차단방역의 권장기준 마련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 주요 돼지질병 방역추진 현황 및 방역대책

가. 구제역

1) 구제역이란?

구제역(口蹄疫, FMD : foot- and-mouth disease)이란 소, 돼지, 양,



이 주 호 질병방역부장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염소, 사슴 및 야생반추 동물 등과 같이 발굽이 둘로 갈라진 우제류(偶蹄類) 동물에서 발생하는 바이러스성(원인체 : FMD 바이러스) 가축전염병이며, 감염되면 체온이 급격히 상승하고 입, 혀, 발굽 또는 젖꼭지 등에 물집이 생기며, 식욕이 저하되어 심하게 앓거나 죽게 되는 급성 전염병으로 제1종 가축전염병이다.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A급으로 분류한 15종의 질병 중에서도 가장 피해가 높은 악성 가축전염병이다.

2) 구제역 방역추진현황

2000년도에 구제역이 발생한데 이어 2002년 5월 2일부터 6월 23일사이 4개 시·군에서 16건(소 1, 돼지 15)이 다시 발생하였으나, 범정부적

인 방역활동과 강력한 살처분 정책을 수행한 결과 '02. 11. 29일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인증을 받아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였다.

또한, 지난 해에는 청정국 유지를 위하여 구제역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인 3월부터 5월까지를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하여 휴대품검색, 수입조사료 등 위험요인에 대한 소독·관리 등 국경검역을 강화하여 구제역 유입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국내 방역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구제역 정밀검사 등 예찰활동과 농가의 현장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등 방역대책을 범정부차원에서 추진하였으며, 이후에도 평시방역체제로 전환하여 꾸준하게 방역대책을 추진한 결과 현재까지 추가 발생이 없었다.

3) 구제역 방역대책

정부에서는 구제역 유입방지를 위한 불법 휴대축산물의 반입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탐지견의 투입을 확대하고, 외국인 농업(산업)연수생과 해외 가축농장 방문자에 대한 휴대품 검색을 강화하는 등 공·항만의 국경검역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경검역만으로 완벽한 차단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축산농가에서 “전국 소독의 날”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축사 내·외에 소독 등 차단방역 활동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또한, 외국인농업연수생을 고용하고자 하는 농가에서는 철저한 휴대품 검색과 소독을 실시하고, 방역 수칙을 교육한 후 축사에 출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축증개상·동물약품상·사료판매상·분뇨운송자·인공수정사 등 농장출입자는 농장출입 전후에 소독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고, 도축장·축산시설 운영자 또한 소독 등 철저히 방역관리를 하여야 한다. 아울러, 정부에서도 구제역 감염축의 조기 검색을 위하여 임상·정밀검사 실시 등 예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00년, '02년에는 구제역이 발생하였고,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돼지콜레라가 발생하여 '01년 12월 청정화 달성 이후 금지되었던 예방접종을 다시 전국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또한,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 돼지설사병(PED) 등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질병이 상재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농가 뿐만 아니라 양돈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

돼지에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농장내로 병원체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량·사람의 출입통제·소독 등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아울러, 가축의 이동통제시스템 구축 등 선진화된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갖추고, 차단방역 등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나. 돼지콜레라

1) 돼지콜레라란?

돼지콜레라는 돼지에서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원인체: 돼지콜레라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감염되면 고열, 식욕 결핍, 설사나 변비, 피부청색증, 뒷다리를 잘못 쓰거나 비틀거리는 증상이 나타난다. 돼지콜레라가 발생하면 치료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감염된 돼지는 모두 죽게 되는 돼지 질병 중 가장 무서운 전염병으로 제1종 가축전염병이며, 국제수역사무국에서 정한 A급 가축전염병이다.

2) 돼지콜레라 방역추진현황

우리나라에서는 돼지콜레라가 1947년에 처음으로 발생 보고된 이후 1999년까지 매년 전국적으로 발생하여 왔으나, 돼지콜레라근절대책(3단계)을 강도 높게 추진한 결과 '01년

12월 1일 전국적인 예방접종을 전면 중단하고 청정화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02년 4월 강원도 철원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한데 이어 같은 해 10월~12월 사이에 인천시 서구·강화군, 경기 김포·이천지역에서 다시 발생하여 긴급방역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03년 들어서면서 3월 18일 전북 익산시에서 발생한 이후 5월 8일까지 총 6개도 25개 시·군 65개 농장에서 발생하였는데, 발생양상이 전국적이고 동시다발적이어서 조기 차단을 위하여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예방접종을 실시하게 되었다.

5월 8일 발생이후 3개월이 지난 8월 9일 경북 상주시에 1건, 8월 20일과 8월 27일 충남 당진군에서 2건이 추가 발생하였다. 이후 10월 10일 울산시 울주군에서 1건, 경북 경주시에서 1건, 11월 7일 경

기 안성시에서 다시 1건이 발생하는 등 산발적인 발생양상을 보이고 있다.

3) 돼지콜레라 방역대책

전국적인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이후에 일부 양돈농가에서 예방접종을 소홀히 하거나 누락으로 간헐적인 발생이 예상되고 있으며, 또한, 양돈장 주변의 환경오염이나 잠복감염 개체가 존재하고 오염된 분변 등 전파 위험요인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될 경우 추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최근 발생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예방접종을 하지 않거나 적기에 접종하지 않은 돼지를 입식할 경우 또는 출처가 불분명한 딸이돼지 등을 농가에서 구입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다. 돼지오제스키병

1) 돼지오제스키병이란?

돼지오제스키병은 바이러스성(원인체 : 오제스키 바이러스)

가축전염병으로 성돈에 감염되면 주로 불현성으로 나타나지만 어린 돼지에 감염될 경우에는 치사율이 높다. 임상증상으로는 폐렴, 신경증상을 나타내고 임신돈에서는 유산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2) 돼지오제스키병 방역추진현황

1987년 우리나라에 발생 보고된 이후 일부지역에서 제한적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다. 돼지오제스키병이 근절되지 않는 원인으로서는 축주가 발병 사실을 은폐하거나 감염돈을 판매·무분별한 돼지 입식, 또는 감염된 웅돈의 정액을 사용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임상증상을 나타내지 않는 잠복감염된 개체를 발견하기가 어렵고, 출입자·차량의 출입통제, 소독 등 차단방역이 미흡하여 발생농장 인접농장으로 전파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돼지오제스키병의 근절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종돈과 발생지역(과거 1년 이내에 발생한 지역으로 발생농장 반경 3km 이내의 지역)의 모돈·웅돈에 대하여는 주기적으로(6개월 주기) 검사하고, 입식 돼지에 대해서는 입식후 15일 이내에(검사증명서 휴대 돼지는 검사 생략), 발생농장은 2개월마다(비발생농장 인정 신청전까지)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른 검사 결과 양성축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사육돼지의 이동통제, 사람·차량 출입통제, 교통차단, 축사소독 등 방역조치토록 하고 있다.

3) 돼지오제스키병 방역대책

돼지오제스키병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혈청검사를 통해 무증상의 감염개체를 색출하여 조기에 도태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또한, 발생지역에 대하여는 집중적인 교육·홍보와 함께 전파·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감염축의 이동통제를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농가에서는 출입자·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축사주변에 소독 등 차단방역 등 방역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돼지콜레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농가에서 철저하게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홍보와 함께 혈청검사 강화를 통한 예방접종 미실시 농가 적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고역가 항체 보유 모돈의 조기도태를 유도하여 감염원을 제거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발생지역과 80% 항체가 미만 지역 등 방역 취약지역에 대하여 현지점검을 실시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양돈농가에서는 외부에서 돼지를 입식할 경우에는 예방접종확인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돈사의 내·외, 농장주변, 출입자·차량 등에 대하여 주기적인 소독실시 등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라. 돼지설사병

1) 돼지설사병

돼지에서 설사가 일어나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양돈농가에서는 돼지전염성위장염(TGE)과 돼지유행성설사(PED) 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크다. 이들 질병은 일교차가 심한 늦가을부터 추운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급성설사병으로서 특히, 1주령 미만의 젓먹이 새끼 돼지에 감염될 경우 대부분 죽게 되는 제2종 가축전염병이다.

돼지전염성위장염은 TGE 바이러스가 원인체이며, 주요 임상증상으로는 우유덩어리 같은 구토물과 회백색 또는 황록색의 심한 악취가 나는 물 같은 설사를 3~4일간 하고 털이 거칠어지게 된다.

젓먹이 새끼는 설사로 인한 심한 탈수증을 보이다가 발병한지 1주일 이내에 대부분 폐사하게 된다. 어미돼지가 감염되면 식욕부진과 설사를 보인 후 회복되지만 산유량이 줄거나 중지되어 새끼돼지는 죽거나 위축돈이 된다.

돼지유행성설사는 PED 바이러스가 원인체로 돼지전염성위장염 증상과 매우 비슷하며 젓먹이 자돈에서 주로 발생하며, 분만 1주령 이내의 젓

먹이 자돈이 감염되면 구토증상과 뒤엉킨 상태로 포개져 있고 심한 설사증세를 보이며, 심한 물 같은 설사와 복통으로 2~3일간 젖을 빨지 못하면 탈수증으로 기력이 약해져서 대부분 죽게 되고, 육성돈이나 어미돼지는 구토, 식욕부진, 무기력증, 설사 등의 증상을 보인 후 회복된다.

2) 돼지설사병 예방대책

돼지전염성위장염, 돼지유행성설사병 등 돼지에서 설사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돼지를 신규로 입식하는 경우에는 믿을 수 있는 농장에서 구입하여야 한다. 또한, 구입한 돼지는 격리 사육하면서 예방접종을 실시한 후 합사시켜야 한다. 농장 내·외부의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고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하며, 출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철저히 소독한 후 출입시켜야 한다.

임신모돈에 대한 예방접종은 계절에 관계없이 매 분만시 마다 2회 접종해야 하며, 옹돈과 후보돈도 반드시 종부전에 2회 접종해야 한다.

분만예정 모돈 및 분만 돈방은 철저히 소독하고 적절한 온도(30°C 정도)가 유지되

도록 하여야 하며, 청결하게 유지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 멧음말

돼지에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농장내로 병원체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량·사람의 출입통제·소독 등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외부로부터 돼지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하고 떨어뜨리와 같은 출처가 불분명한 돼지는 구입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구입한 돼지는 최소한 2주간 격리 사육하면서 필요한 질병 예방접종을 실시한 후 기존 돈사에 입식시키고, 농장 내·외부의 주기적인 소독 등 기본적인 차단방역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양돈산업에서 질병으로 인한 피해를 줄여 경제적인 손실을 방지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양돈농가 스스로 자율방역 의식을 갖고 실천해야 한다.

아울러, 가축의 이동통제시스템 구축 등 선진화된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갖추고, 차단방역 등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양돈**